



대뉴욕뷰티서플라이협회

THE GREATER NEW YORK BEAUTY SUPPLY DEALER'S ASSOCIATION

협회윤리규정

제 1 조:신규 업소 거리 제한 규정

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업소를 계획 할 경우다음과 같은 거리 제한 규정을 준수 한다.

1.뉴욕시의 상권이 형성된 STREET 지역

· 기존 업소로부터 직선거리 200 야드 이내에는 개업하지 않도록 한다.(직선거리라 함은 기존 업소로 부터 반경 200 야드로 한다.)

2.뉴욕시의 외곽 지역

· 기존 업소로부터 자동차로 측정하여 0.5 마일 이내에는 개업하지 않도록 한다.

3.Long Island 지역

· 지역 협의회에서 Nassau County 는 2 마일 이상,

Suffolk County 는 3 마일 이상으로 한다.

제 2 조 : 과당 경쟁 방지 규정

거리 규정에 관계없이 신규 업체가 개업하여 과당 경쟁을 유발 하였을 때(기존 회원업체의 불만 접수가 있을 경우) 지역 부회장의 주관 하에 지역 협의회를 개최하여해당 지역 회원 출석 인원의 1/2 이상의 의결로 과당 경쟁 유발 업체로 결의할수 있다.

제 3 조 : 유사업종의 근접침투방지 및 과당경쟁방지

근접침투 방지를 위한 Beauty Supply Store 의 범위를 설정 운영 내규로 활용한다.협회가 정한 거리 규정을 위반하고 Beauty Supply Store 를 운영할 목적으로 상호를변경 후 신규 Store 를 개업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Beauty Supply Store 로 간주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1.변경된 상호를 간판으로 사용하지만 내부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Hair Color 제품 및 Chemical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Hair 제품 및 Wig 를 판매하는 경우.

3.변경된 상호라 함은...

· Pharmacy

· Discount Store

· 99cent Store

·Gift Shop Store

· 전문 Hair 판매업소(Hair Supply)

· 업종이 불분명한 것은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강화

본 협회의 회원 자격은 Beauty Supply 상호 간판을 부착하고 미용 재료 및 Hair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영주는 회원에 가입할수 있다.

1.기존 회원사의 유지 관리

· 본 협회가 규정한 정관 및 윤리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회원은 매년 협회비를 3 월 이내에 납부 한다.

· 회원사가 1 년간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에서는 서면이나 문자,SNS 등으로회원유지를 문의한 다음 납입여부 결과에 따라 회원사 자격유지 또는 자격 상실을결정한다.

· 회원이 200 야드 이내에 개업한 경우에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 위반업소는 2 회 서면 및 SNS,전화로 경고후 1 주내에 시정되지 않을경우총회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 매년 정기 총회시 회원사 현황을 정리 배포 한다.

2.이사 및 회원사의 경영주가 바뀌었을 경우

· 이사회이 결의가 없으면 이사직은 자동상실 된다.

· 회원 자격은 유지된다.

3.기타

· 회비는 가게 수에 비례하여 납부하며, 투표권은 입회원서에 등록된 대표자 1 인에게만 인정 된다.

· 이사의 신분으로 연속 3 회 이상 이사회 불참시 이사 자격을 자동 상실 한다.

· 도매업을 겸할 경우 신규 이사는 되지 않는다.

제 5 조 : 신규 회원사의 가입 절차

1.Beauty Supply 상호 간판을 부착하고 미용 재료 및 Hair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소경영주는 가입할수 있다.

2.본협회의 목적에 적극 찬성하고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것을 약속하고 본회가 마련한 가입 신청서 양식에 서명하면 협회의 소정 절차에 따라 가입할수 있다.

3.신규 회원은 기존 회원사의 추천에 의하여 지역 부회장에게 접수하며,접수된서류는 집행부 임원회의에서 회원의 자격 여부를 심사후 정회원 여부를 결정한다.

4.신규 회원은 가입 신청서와 함께 입회비 및 회비를 동시에 납부한다.

· 입회비 \$200(2nd Store 입회비 면제)

· 회 비 \$200/year(매년 1 월 1 일 기준)

· 입회비 및 회비는 임원회의 의결로 정기 총회에서 이를 인준한다.

5.근접거리의 신규회원 가입 신청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회원의 동의를 구하되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 6 조 : 회원사간 종업원 스카우트 근절

1. Beauty Supply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 종업원의 육성은 개별회원사에서 육성 관리한다.
2. 종업원 스스로 직장을 옮기는 것은 제재할수 없으나 급여를 빌미 삼아스카우트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3. 동일한 지역내에 가까운 Store 에서 근무한 종업원은 채용하지 않는다. 특히 종업원에 관련하여 전 근무지 회원사의 경영주가 불만을 협회에 접수하면 스카우트 업소는 되돌려 보내는데 협조한다. (단, 전근무지 업주가 해당 종업원이 꼭 필요하다고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4. 동일한 지역이 아닐지라도 종업원 스카우트와 관련하여 협회에 접수된 사항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